

국산 백신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 사업 사업 신청 관련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

* 사업신청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.

Q1

타 부처의 해당 사업 및 유사 사업에 지원하여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또 지원이 가능한가요?

- ▶ 기 지원받은 지원품목이라도 사업내용(성능시험 시험항목과 유형)에 차별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. 다만, 동일 지원품목으로 동일한 성능시험으로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

Q2

국내외 GLP 기관을 통한 시험성적서(CoA) 획득을 위한 시험분석 비용만 지원이 가능한가요?

- ▶ 국내외 GLP기관 이외에 외부위탁이 가능한 공인된 시험연구소(KOLAS 인증 등)와 일반시험연구소 등에서 소요되는 성능시험(시험·분석·검사·인증) 비용에 대해서는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. (국내외 구분없이 성능시험기관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)

Q3

국산 백신 원부자재 16개 품목만 신청 및 지원할 수 있나요?

- ▶ 아닙니다. 해당 품목 외에도 기업의 우선 품목에 따라 필요한 성능시험 비용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특허청 분석결과, 국산화가 시급히 필요한 품목이 16개 품목으로 지정되어 해당 품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Q4 사업신청 후, 선정평가는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나요?

- ▶ 네, 맞습니다. 선정평가는 사업책임자가 사업계획에 대해 대면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. 다만, 감염병 예방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.
- ▶ 사업선정 평가일정 등은 확정되는 대로 사업실무자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드리오니, 사업실무자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Q5 사업신청 후, 선정평가는 발표자료는 어떤식으로 준비하나요?

- ▶ 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(PPT일반형)을 원칙으로 작성하며, 기관 자율서식으로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.
※ 본원은 별도의 파워포인트(PPT)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▶ 아울러, 발표자료는 사업계획서 목차를 기준으로 평가항목과 평가요소, 배점기준 등을 참고하시어 신청기관의 사업 주요내용이 중점적으로 기재(또는 표현)되도록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
- ▶ 접수마감 후 사업선정 평가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발표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Q6 사업신청 후, 선정평가는 반드시 사업책임자가 발표해야 하나요?

- ▶ 네, 맞습니다. 다만, 불가피한 사항으로 사업책임자의 발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사업계획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발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반드시 진흥원과 사전 협의(승인)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.

Q7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은 불가능한가요?

- ▶ 모집기간 내에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가능하고, 이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만, 모집 마감 이후에는 사업계획서의 수정(또는 변경)이 불가능하오니 이점에 유의하시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Q8 자기부담금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?

- ▶ 기업 유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중견기업 80%, 중소·벤처기업은 90%를 지원 예정으로 총 사업비 기준으로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자기부담금은 중견기업은 20%, 중소·벤처기업은 10% 만큼만 현금으로 부담하시면 됩니다. 즉,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할 때 국고보조금 최대 금액 1억 원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총 사업비가 결정됩니다. (총 사업비에는 부가가치세 제외)

구분	국고보조금	자기부담금	총사업비
중견기업	100,000,000원	25,000,000원	125,000,000원
	80%	20%	100%
중소·벤처기업	100,000,000원	11,120,000원	111,120,000원
	90%	10%	100%

참고로, 사업계획서(소요예산) 작성 시에는 중견기업은 최대 125백만원 까지, 중소·벤처기업은 111.12백만원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. (초과 되는 집행금액은 사업비 외 금액으로 본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)

Q9 사업계획서 내에 사업(소요)예산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나요?

- ▶ 네, 최대한 명확하게 산출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. 예산 비목은 e나라도움 비목(운영비-일반용역비)으로 작성해야하며 비목 과 세목변경 시 상위보조사업자(한국보건산업진흥원)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므로 최대한 명확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(본 사업은 일반용역비 외 인건비 등은 편성 및 집행이 불가능합니다.)
- ▶ 아울러, 사업예산(소요예산)의 산출내역에 있어 성능시험 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(증빙)할 수 있는 자료(위탁시험기관으로부터 받은 견적서, 가계약서 등)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 또한 선정이 후 협약 전까지 반드시 위탁계약서(또는 견적서) 최종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▶ 사업비의 정산은 해당 사업계획서상의 소요예산을 기준으로 집행정산하며,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의 집행비율 대로 집행하여야 합니다.

Q10 사업수행을 위한 계좌는 총 2개가 맞나요?

- ▶ 네, 맞습니다. e나라도움 예탁계좌(가상계좌이며 국고보조금 교부받는 계좌)와 자기부담금 계좌로 총 2개입니다. 예탁계좌는 사업 신청 시 자기부담금 계좌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생성 됩니다.

Q11 자기부담금은 언제까지 납입을 해야 하나요?

- ▶ 자기부담금은 협약체결 후 1차 보조금 지급 전까지 자기부담금 전용계좌로 입금하고, 해당 입금확인증을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만약 입금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
Q12 사업비 정산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나요?

- ▶ 네. 본 사업은 검증대상 사업으로, **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며**, 회계법인이 발행하는 검증보고서를 반드시 사업비 정산시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
Q13 회계정산을 위한 검증제안 수수료는 어떻게 편성해야 되나요?

- ▶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회계정산 수수료(운영비-일반수용비)는 자기부담금에 포함하여 편성하고, 총 사업비(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을 합한 금액)을 기준으로 회계정산수수료를 산정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. (부가가치세는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사업비 집행시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)

[참조] 사업비 규모별 회계정산 검증수수료

총 사업비(국고보조금+자기부담금)	검증수수료 (부가가치세 별도)
5천만원 미만	672,000원
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	712,000원
1억원 이상 ~ 2억원 미만	768,000원
2억원 이상 ~ 3억원 미만	867,000원
3억원 이상 ~ 5억원 미만	1,000,000원
5억원 이상 ~ 10억원 미만	1,130,000원
10억원 이상 ~ 10억원 미만	1,350,000원
20억원 이상 ~ 30억원 미만	1,458,000원

※ 상기 검증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임.

※ 간접보조사업자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,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-나라도움) 상에서 수행기관이 별도의 정산보고서 생성 및 검증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**참여 기관** 별로 검증수수료 계상함.